

#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3년 6월 20일  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6. 3(화)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3. 6. 20(금)
- 다. 상정일자 :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3. 6. 20)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무과장 김일래)

### 가.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청사 규모를 규정하고 대부료 연체 이자율을 인하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매각대금 이자율 인하 (안 제22조)
-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차등인하 (안 제28조)
- 청사기준을 규정 (안 제47조)
- 청사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 (안 제47조)
- 50억원 이상 공용·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청사 설계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 (안 제47조)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○ 본 조례는 평창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조례입니다.

○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잡종재산등의 매각대금 이자율을 1~2%인하하고 연체료는 기간에 따라 차등이율을 적용토록 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. 이는 은행권금리인하에 형평을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.
- 종전의 규칙으로 되어 있던 청사기준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설계기준이 마련되어 표준안으로 제시됨에 따라 그 표준안을 모델로 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이 청사·종합회관 신축시 적정규모를 제시하므로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등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○ 잡종재산의 개념은?	○ 행정재산(공용재산·공공용재산·기업용재산) 및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(국유재산법 4조 4항)을 말함.

**5. 토론요지** : 집단민원해소를 위해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온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 및 구화전정리에관한법률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경작자에게 매각할 때 민원의 편의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#### 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**

붙 임 :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
#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3년 6월 20일

제안자 :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## 1. 수정이유

-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 및 구화전정리에관한법률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경작자에게 매각할 때 민원의 편의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## 2. 수정주요골자

- 안 제39조의2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구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경작자에게 매각할 때.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매수 신청한 토지에 한한다.

#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9조의2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구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경작자에게 매각할 때.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매수 신청한 토지에 한한다.

## 수정안 대비 표

개정안	수정안
제39조의2(수의계약매각 범위 등) ① - ② (생략) ③ (생략) 1-3 (생략) ④ (생략) ⑤ (생략) 1-3 (생략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신설)</u></p>	제39조의2(수의계약매각 범위 등) ① -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-3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 1-3 (현행과 같음) 4. <u>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구화 전정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토지를 현경작자에게 매각할 때,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매수 신청한 토지에 한한다.</u>